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증 개정령

상공자원부는 도시가스공급배관에 대한 완성검사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도시 가스사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주요골자를 보면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가스공급시설이 손상되어 가스공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안 제4조 및 제10조)

- 최고사용압력이 일정 이상인 도시가스배관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설치한 배관의

길이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치한 배관의 길이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치한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를 받도록 했다.(안 제15조의 2)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사망의 경우 1인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는 등 보상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후유장애에 대하여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6조)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p>제 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오피스텔·콘도미니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u>동력자원부장관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동”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스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다만,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p> <p>4. ~8. (생략)</p> <p>9. “제1종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가. 학교·유치원·<u>새마을유아원·시설강습소·병원</u>(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시장·공중목욕탕·호텔·여관과 그 밖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나. 극장·교회 및 공회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p> <p>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u>심신장애복지시설</u>로서 수용 능력이 20인이상인 건축물</p> <p>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p> <p>마. “제2종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제 2조(정의) ①</p> <p>1. ~2. (현행과 같음)</p> <p>3.</p> <p style="text-align: right;">상공자원부장관</p> <p>4. ~8. (현행과 같음)</p> <p>9.</p> <p>가. 새마을유아원·학원</p> <p>· 병원</p> <p style="text-align: right;">호텔</p> <p>및 여관</p> <p>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p> <p>다.</p> <p>라. 장애인복지시설</p> <p>마.</p> <p>10. “제2종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 보호시설외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p>

법령개정

현 행	개 정 안
<p>가. 주택</p> <p>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 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 부분의 면적이 100 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제 <u>1종보호시설로 구분되는 것은 제외한다.</u></p> <p>②법 제2조 제3호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대 량수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3. (생 략)</p> <p>③법 제2조 제5호에서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 시가스 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 함한다)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의 경우에는 가스사용 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을 말한다)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 속설비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 된 가스계량기를 제외한다.</p> <p>④법 제2조 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 용자의 시설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와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말한다.</p>	<p>가.</p> <p>나.</p> <p>것</p> <p>②상공자원부령</p>
<p>제 3조(허가신청서등) ①(생 략)</p> <p>②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허가신청서 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p> <p>1. ~2. (생 략)</p> <p>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신원증명서</p> <p>제4조(변경허가의 제외사항등) ①법 제3조 제1항 후단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을 말한다.</p>	<p>1. ~3. (현행과 같음)</p> <p>③</p> <p>상공자원부령</p> <p>④</p> <p>상공자원부령</p> <p>제 3조(허가신청서등) ①(현행과 같음)</p> <p>②</p> <p>1. ~2.(현행과 같음)</p> <p>3. <삭 제></p> <p>제4조(변경허가의 제외사항등) ①</p> <p>상공자원부령</p> <p>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 하여 가스공급시설이 손상된 경우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 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따 른 것일 때에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p>

현 행	개 정 안
1. ~4.(생 략) ②(생 략)	1. ~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 8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로 서식의 <u>지위승계신고서</u> 에 승계인의 <u>신원증명서</u> 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 지위승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10조(공사계획의 승인) ①법 제11조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또는 <u>동력자원부령</u>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사 또는 사항을 <u>말한다</u> .	제10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상공자원부령이 상공자원부령 말한다. 다만, 별표1 에 해당하더라도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에 따른 것일 때에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 ② 공사를 한 경우 및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사후 또는 설치 후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 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2서식의 비 상공급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4.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5. 비상공급시설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
〈신 설〉	

법령개정

현 행	개 정 안
<p>③(생 략)</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p>⑤제4항</p>
<p>제13조(시공자의 자격) ①영 별표2의 시공자의 자격란에서 “<u>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설비공사교육을 받은 자</u>”라 함은 공사가 <u>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u>을 얻어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p> <p>②영 별표2의 시공자의 자격란에서 “<u>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u>”라 함은 공사가 <u>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온수보일러설치 교육을 이수한 자</u>”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사가 <u>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u>을 얻어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p> <p>1. ~2. (생 략)</p>	<p>제13조(시공자의 자격) ①</p> <p style="text-align: center;">상공자원부령</p> <p style="text-align: right;">상공자원부장관</p> <p>②</p> <p style="text-align: center;">상공자원부령</p> <p style="text-align: center;">상공자원부령</p> <p style="text-align: right;">상공자원부장관</p> <p>1. ~2.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2(시공관리자의 자격) 영 제12조 제3호 단서에서 “<u>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u>”라 함은 공사가 <u>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u>을 얻어 실시하는 <u>안전관리원 양성교육이수자를</u> 말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및 그 부대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의 기술요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사가 <u>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u>을 얻어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p>	<p>제13조의2(시공관리자의 자격)</p> <p style="text-align: center;">상공자원부령</p> <p style="text-align: right;">상공자원부장관</p> <p style="text-align: right;">일반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p> <p style="text-align: right;">상공자원부장관</p>
<p>제13조의3(시공자의 등록신청등)</p> <p>①(생 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p> <p>(<u>안전관리원 양성교육이수자</u> · 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 ·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증사본)</p>	<p>제13조의3(시공자의 등록신청등)</p> <p>①(현행과 같음)</p> <p>②</p> <p>1. (현행과 같음)</p> <p>2.</p> <p style="text-align: right;">(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p>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증 개정령

현 행	개 정 안
<p>③~⑤(생 략)</p> <p>제15조의2(검사의 대상)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는 다음의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1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사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의 경우에는 연장이 <u>300미터미만인 배관의 설치공사</u> 및 연장이 <u>300미터이상인 배관의 교체공사</u>(이미 설치된 것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내경 및 동일한 압력의 배관을 교체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하같다) 3. (생 략)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u>가스공급시설</u>의 정기검사는 다음 시설에 대하여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은 시설 2. <u>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대상에서 제외된 배관 <p>제16조(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중간검사신청서를, 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자 및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제외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완성검사·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u>제출하여야 한다</u>. 다만,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계획의 승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 갈음하여 중간검사·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⑤(생 략)</p> <p>제15조의2(검사의 대상)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현행과 같음) <p>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공사 2. 월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배관길이가 20미터이상 증설되는 변경공사 ③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및 제2항 2. 제1항 및 제2항 <p>제16조(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등) ①</p> <p>제출하되, 완성검사 신청서는 최초의 중간검사 신청을 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p>

법령개정

현 행	개 정 안
<p>②(생 락)</p> <p>③법 제15조 제2항에서 “<u>동력자원부령</u>”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전기설비 및 당해 공작물과 관련된 가스 사용시설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및 당해 기기와 관련된 가스사용시설(검사대상기기 설치실 안의 시설에 한한다)을 제외한다.</p> <p>1. 월사용예정량이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이 경우 월사용예정량의 산정방법은 <u>동력자원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p> <p>2. (생 락)</p> <p>④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최근의 정기검사(정기검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월 사이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연1회 공사가 지정하는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⑤~⑧(생 락)</p>	<p>②(현행과 같음)</p> <p>③ 상공자원부령</p> <p>1. 상공자원부장관</p> <p>2. (현행과 같음)</p> <p>④</p> <p>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상호 연결된 시설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p> <p>⑤~⑧(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 완성검사등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4. (생 락)</p> <p>〈신 설〉</p> <p>②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 내지 별표4 및 별표6에 준하여 <u>동력자원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7조(완성검사등의 기준 및 방법) ①</p> <p>검사기준</p> <p>1. ~4.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른 검사 방법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p> <p>상공자원부장관</p>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공급조건승인신청서) 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조건의 승인은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급조건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u>동력자원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생 략)</p> <p>제30조(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위해예방조치)</p> <p>①(생 략)</p> <p>②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u>도시가스업소에서 3년이상</u>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원교육을 받은 자로 하고, 정기안전점검원의 수는 수요가 구 4천가구마다 1인이상으로 한다.</p> <p>③(생 략)</p> <p>제32조(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등)</p> <p>①(생 략)</p> <p>②영 별표3의 특정가스사용시설란의 자격란에서 “<u>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u>”라 함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u>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원양성교육</u>을 받은 자를 말한다.</p> <p>제36조(보험금액) ①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u>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u>500만원</u> (생 략)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u>5천만원이상</u>.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p>②(생 략)</p>	<p>제24조(공급조건승인신청서) ①</p> <p>상공자원부장관</p> <p>②(현행과 같음)</p> <p>제30조(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위해예방조치)</p> <p>①(현행과 같음)</p> <p>②</p> <p>가스관계업무에 3년이상</p> <p style="text-align: right;">상공부자원부장관</p> <p>③(현행과 같음)</p> <p>제32조(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등)</p> <p>①(현행과 같음)</p> <p>②</p> <p style="text-align: right;">“상</p> <p>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라 함은 공사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받은 자</p> <p>제36조(보험금액) ①</p> <p>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1천만원</u> 2. (현행과 같음)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12에서 정하는 금액 4. <u>1억원이상</u> <p>②(현행과 같음)</p>

법령개정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③재무부장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u>동력</u> <u>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③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 ④제1항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동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 고 지급한다. ⑤</p> <p style="text-align: center;">상공자원부장관</p>
<p>제38조(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동력자원부장관은 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밖에 가스의 안전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시설기준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거나 별표에 의한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38조(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상공자원부장관</p>